

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2002. 8. 23

관광건설위원장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8월 8일, 충청북도지사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8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 제203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(2002. 8. 22)  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 및 의결

## 2. 제안설명

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김 종 운)

### 가. 개정이유

-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·공포(2001. 7.24, 법률 제6490호)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·공포(2001. 11. 22, 대통령령 제1741호)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개선·보완사항을 정하여
- 도민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발생 억제 및 옥외광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골자

- 1)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추가(제4조)

- 횡단보도 안전표시등·지상 변압기함
  - 가로등 자동점멸기함, 지하도·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
  - 교통안전시설물·낙석방지시설물·방음벽·계단등
- 2)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거나 빛이나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, 광고물등에 피뢰설비 설치·관리 의무 추가(제6조)
  - 3) 창문이용 광고물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고 당해 건물 사용자의 성명·주소·상호·상표·전화번호·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(제11조)
  - 4) 공연간판중 지주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제13조)
    -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의 높이 5미터, 1면의 면적 10제곱미터 합계 면적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, 네온·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 사용금지
  - 5) 하나의 지정게시판이나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토록 규정(제15조)
  - 6) 광고물관리심의 소위원회 심의사항 규정 신설(제20조)
    - 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
    - 도지사가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등
  - 7)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등의 확대(제22조)
    -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
    -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
  - 8) 제거된 광고물의 관리등 규정 신설(제24조)
    - 광고물등을 제거한 취지, 보관장소를 광고물 등이 있던곳에 표시하여야 하고, 광고물의 종류, 수량, 내용등을 시·군계시판 또는 공보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